

장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향학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심전력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조(선정 및 지급시기) ① 장학 대상자 선정은 매 학기 단위로 등록기간 전에 선정하되, 장학 종류에 따라 학기 중에도 선정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근거로 장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모든 장학금의 지급은 연 2회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단, 외부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의 경우는 예외로 함)

제4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장학금 이중 수혜 자격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되, 1. 외부 장학금(국가, 지자체, 사설 등), 2. 교내 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③ 장학금은 수업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특전) 대학을 대표하여 대내외 활동에 있어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재해 기타 사정으로 학비부담이 곤란한 자에게 대하여는 별도로 수업료 감면의 특전을 부여한다.

제6조(자격규칙)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제적
2. 휴학
3.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단, 해당 학기에 한함)
4. 기타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장학심의 위원회

제7조(위원) 장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장학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리 한다.
3. 위원은 학생과장, 교무과장, 각과 학과장, 사무처장,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장 장학금

제9조(구분)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0조(종류와 규정) 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백산장학 : 신입생 선발고사 합격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최우수장학 : 전 학년에서 최고득점자에게 한 학기 수업료의 1/2~1/3을 지급한다.
3. 우수장학 : 각 반에서 성적이 최우수한 자로써 평점이 3.8 이상인 자로 1명에게 한 학기 수업료의 1/3~1/4을 지급한다.
4. 준우수장학 : 각 반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로써 평점이 3.6 이상인 자로 1명에게 한 학기 수업료의 1/4~1/6을 지급한다.
5. 실기장학 : 실기성적이 A이상인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수업료의 1/4~1/6을 지급한다.
6. 공로장학 : 학생회 임원 및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단, 해당 임기동안에 한함)
7. 근로장학 : 교내에서 근로 봉사하는 학생에게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8. 보훈장학 :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한다.
9. 교직원장학 :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학기 당 기준 학점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 2.8 이상인 자에게 수업료의 1/2을 지급한다.(단, 신입생은 학점기준 없음)
② 백산학원 산하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로서 본교 입학시 수업료의 1/2을 한 학기 지급한다.

제11조(외부 장학금) 외부장학금이란 본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의 장학기관, 사회단체, 개인이 지급되는 위탁한 지원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총칭하고 그 선발은 교내 장학규정

에 준한다.

제12조(장학금의 결정) 각 종류별 해당하는 장학 지급 금액은 등록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199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정은 장학 위원회의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1998학년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2000학년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2003학년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정은 장학심의 위원회의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